

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 본격화

산자부, 10월20일 관련고시 확정 ... 이산화탄소 환산 500톤 이상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2 및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10월20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-88호로 고시됐다.

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대상 온실가스는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, 아산화질소(N₂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 또는 육불화황(SF₆) 6가지이다.

감축사업 등록대상은 감축사업의 시작시점(착공 또는 실행하는 등 실제 감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)이 2004년 1월 1일 이후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이산화탄소(CO₂) 환산 연간 500톤 이상이고,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·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및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.

온실가스의 종류 및 GWP

온실가스		GWP	개요
이산화탄소 (CO ₂)		1	인위적 배출 온실가스의 약 60%를 차지하며 80-85%는 화석연료 사용, 15-20%는 삼림훼손 등 토지이용 변화에서 배출
메탄 (CH ₄)		21	인위적 배출 온실가스의 15-20%를 차지하며, 주로 농업, 축산, 생체(biomass)의 분해, 폐기물 매립 및 처리, 석탄채굴 과정에서 배출
아산화질소 (N ₂ O)		310	농업의 비료 사용 및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며 배출량 중 인간활동에 의한 것은 15% 정도
수소불화탄소 (HFCs)	HFC 23	11,700	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로 개발돼 냉매, 소화기 및 폭발 방지물, 분무액, 솔벤트용제, 발포제 등에 사용
	HFC 32	650	
	HFC 41	150	
	HFC-43-10mee	1,300	
	HFC 125	2,800	
	HFC 134	1,000	
	HFC 134a	1,300	
	HFC 143	300	
	HFC 143a	3,800	
	HFC 152a	140	
	HFC-227ea	2,900	
	HFC-236fa	6,300	
과불화탄소 (PFCs)	HFC-245ca	560	
	Perfluoromethane, CF ₄ (tetrafluoromethane)	6,500	
	Perfluoroethane, C ₂ F ₆ (hexafluoroethane)	9,200	
	Perfluoropropane, C ₃ F ₈	7,000	
	Perfluorobutane, C ₄ F ₁₀	7,000	
	Perfluorocyclobutane, c-C ₄ F ₈	8,700	
육불화황(SF ₆)	Perfluoropentane, C ₅ F ₁₂	7,500	변전소의 변압기나 개폐장치, 차단기 등 전력용 변전기기의 절연재료나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
	Perfluorohexane, C ₆ F ₁₄	7,400	

+ IPCC 1996년 개정판 기준

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정부,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△감축사업의 일반요건 △감축사업의 추가성 △감축사업으로 인한 환경적·사회적 영향 △베이스라인 방법론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의 타당성 △예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출의 타당성 △누출량에 대한 고려 △환경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 △기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중심이다.

<화학저널 2005/10/24>